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0. 12 선고 2020나21873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정미

피고, 항소인 파주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사형환

변 론 종 결 2021. 9. 14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2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10. 29. 선고 2019가단15314 판 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 - 주위적(피고는 원고에게, 41,6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2020. 7. 2.부터 파주시 D 대 179㎡ 중 제1심 판결문 별지 1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‘ㄴ’ 부분 50㎡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금

1,051,700원을 지급하라), 예비적(피고는 원고에게, 10,311,9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2020. 7. 2.부터 주위적 청구취지의 ‘ㄴ’ 부분 50㎡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금 260,300원을 지급하라.)

항소취지 -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, 그 해당부분 원고 청구기각.

이 유

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.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